터널공사(Shield-T.B.M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(터널작업)의 규정에 따라 터널공사(Shield-T.B.M공법) 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터널공사 중 Shield-T.B.M 공법을 이용하여 굴착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공사 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Shield-T.B.M 공법"이라 함은 T.B.M(Tunnel boring machine)장비의 전면부(커 터헤드(암반굴착을 위한 원통형의 날))와 후면부에 쉴드장비를 연결하여 터널을 굴착하는 기계식 터널굴착 공법으로서 막장 후방에서 터널 벽면 형상의 원통형 세그먼트(Segment)를 조립하여 이를 지보공 겸 복공으로 이어나가 터널을 구축하는 공법을 말한다.
 - (나) "전면부(Head part)"라 함은 커터헤드(Cutter head), 쉴드 주 본체(Shield main body, 막장부에 설치되는 굴진장비), 그립퍼(Gripper) 등으로 구성되어 터널 막장을 굴착하는 주요 기계부를 말하며, 장비의 특성에 따라 커터(Cutter)의 개수, 그립퍼(Gripper)의 유·무, 실린더(Cylinder)의 개수 등이 다르게 구성된다.
- (다) "그립퍼(Gripper)"라 함은 쉴드 주 본체(막장부에 설치되는 굴진장비)의 원통형 면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로서, 굴진 시 반력을 얻기 위해 장비를 지반에 고정시키는 기계장치를 말한다.